

수원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0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22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김경렬, 이진호

변론 종결2022. 3. 24.

판결 선고2022. 5. 1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122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 25. 접수 제12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211,560,7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560,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인 B는 2019. 1. 1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10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부동산 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211,560,7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2) 적극재산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차량운반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에금, 임차보증금 합계 7,454,203,89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165,856,578원과 매출채권 766,568,622원 합계 932,425,2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주장: 3,047,736,430원, 인정금액: 165,856,578원)

(1)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2) 갑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3,047,736,43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액은 2,799,224,602원이고, E의 채권액은 82,655,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5,856,578원(= 3,047,736,430원 - 2,799,224,602원 - 82,655,250원)이라 할 수 있다.

나) 매출채권(주장: 3,218,935,808원, 인정금액: 766,568,622원)

(1)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2018. 12. 31. 기준 매출채권의 총액은 3,218,935,80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매출금 명세서와 거래처 원장에 위 일자 기준 매출처별 채권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 (2), (3)항의 매출채권 외의 매출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 채권액과 이후의 변제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대차대조표 등의 기재를 기준으로 B의 적극재산을 판단할 수는 없다.

(2)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 아래 표 기재 '매출처'란 기재 매출처에 대하여 아래표 '채권액'란 기재 액수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추가 매출 및 대금 회수 거래가 이루어져 2019. 6. 30.까지 아래 표 '회수액'란 기재 액수의 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당한 대금이 회수된 점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 매출채권 합계 766,568,622원은 B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매출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1	M	312,444,360	162,661,635	2
2	N	45,046,100	83,332,535	3
3	O	63,627,398	70,000,000	4
4	P	83,021,660	66,988,005	5
5	Q	33,330,600	43,817,918	6
6	R	125,940,838	45,000,000	7
7	S	6,839,364	13,164,540	8
8	T	23,008,870	23,008,870	9
9	U	3,452,434	3,452,434	11
10	V	16,337,935	11,000,000	12
11	W	4,078,300	4,078,300	15
12	X	4,971,000	4,971,000	16
13	Y	8,332,070	8,332,070	17
14	Z	14,566,762	6,173,303	18
15	AA	8,247,260	6,000,000	19
16	AB	5,896,000	5,896,000	20
17	AC	3,026,500	3,025,000	23
18	AD	2,443,600	2,443,600	25
19	AE	1,369,291	1,369,291	27
20	AF	528,000	528,000	28
21	AG	60,280	60,280	33
합계	766,568,622	565,302,781		

(3)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AH(을 제22호증 10면, 이하 매출처의 증거 면수 표시에서는 '을 제22호증' 부분 생략한다), AI(13면), AJ(14면), AK(21면), AL(22면), Z시스템에어컨(24면), AM(26면), AN(29면), AO(31면), AP(32면)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기준 채권액은 '0'원인 사실, B의 AQ에 대한 2019. 1. 15. 기준 채권액은 28,323,423원이나 2019. 6. 30.까지 그 1/10인 282,000원만 회수된 사실(30면)이 인정되므로,

을 제22호증 기재 매출채권 중 위 매출처들에 대한 부분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재고자산(주장: 838,536,500원, 인정금액: 없음)

을 제4,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2018. 12. 31. 기준 재고자산의 총액이 838,536,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가 작성한 위 일자 기준 재고자산의 제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를 정리한 재고현황의 총액 합계가 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 총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차대조표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재고현황은 실사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검증한 자료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까지 위 재고현황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일반채권자가 재고현황에 기재된 자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838,536,500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차량운반구(주장: 88,696,310원, 인정금액: 없음)

을 제4,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2018. 12. 31. 기준 차량운반구의 총액이 88,696,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8년경 B에 대하여 3.5톤 화물차량 1대, 1톤 화물차량 3대, 배기량이 2190cc인 다인승차량 2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 위와 같은 톤수와 배기량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차대조표상의 88,696,310원은 감가상각누계액 12,515,902원이 포함된 장부가액에 불과한 점, B가 보유한 자동차는 톤수와 배기량 외에 연식, 구조, 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점, 일반채권자들이 위 차량들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88,696,310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운반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기타(주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1,698,847원, 단기예금 183,6000,000원, 임차보증금 5,000,000원, 인정금액: 없음)

을 제4의 기재에 의하면, B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2018. 12. 31.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총액이 71,698,847원으로, 단기예금의 총액이 183,6000,000원으로, 임차보증금의 총액이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단기예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임차보증금과 공제되는 연체차임은 없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까지 위 가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소비하기 쉬워 일반채권자들이 그 소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위 가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예금 채권, 임차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극재산 한편 B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 대한 매입채무 150,891,090원, H에 대한 매입채무 80,369,809원,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60,000,000원 합계 591,260,899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 B의 G에 대한 미지급 매입금이 150,891,090원, H에 대한 미지급 매입금이 80,369,809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매입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행은 2018. 6. 21. B에 3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9. 2. 22.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이후 원고가 보증금액이 288,000,000원인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출금 채무 360,000,000원 상당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799,224,602원과 E에 대한 채무 82,655,250원은 적극재산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는바, 위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라)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 C은행에 대한 채무 중 일부와 적극재산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각 대위변제함에 따라 성립하였으므로,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 위 구상금채무는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2018. 12. 31. 기준 부채 총액이 5,166,738,393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에서 본 소극재산 외에도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대차대조표 기재를 기준으로 소극재산의 가액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합계 932,425,2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갖고 있었고, 소극재산 합계액 591,260,899원은 적극재산 중 매출채권 가액 766,568,622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이에 기초한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나칭

판사류희상

별지

1) 2019. 1. 15. 이전에 추가 매출이나 대금 회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거래처 원장(을 제22호증)의 전기이월 금액과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일자 기준 잔액과 같다.

2) 순번 1의 회수액은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누계액(이하 '누계액'이라 한다)

224,967,235원에서 2019. 1. 15. 이전에 회수된 62,305,600원(= 20,000,000원 +

2,105,600원 + 17,600,000원 + 22,600,000원)을 뺀 금액이고, 순번 2의 회수액은 누계액 94,103,680원에서 2019. 1. 15. 이전에 회수된 10,771,145원을 뺀 금액이며, 순번 5의 회수액은 누계액 66,336,918원에서 2019. 1. 15. 이전에 회수된 22,519,000원(= 7,125,000원 + 15,394,000원)을 뺀 금액이다. 순번 6, 7, 9, 11, 1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한 금액이고, 그 외에는 누계액과 회수액이 동일하다.